







보도참고자료

- 미래창조 금융
- •따뜻한 금융
- 튼튼한 금융

배포 시 보도 가능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	
책 임 자	권대영 과장(2156-9710)	담 당 자	고영호 서기관(2156-9711) 김영근 사무관(2156-9712)
배 포 일	2015. 10. 23(금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5매

제 목: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제정위원회 1차 회의 개최

- 법령규제, 그림자규제 통제방안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-

(institutio	nalization) ই	·기 위해	「금융규제	세 운영규정」	제정	추진
(6.15) ,	「행정지도	등 그림	자규제 개	선방안(9.18)」	등을	제도화
그 동안	금융개혁	차원에서	마련한	「금융규제개	혁 추	진방향

[주요 내용]

- ① 규제 일몰제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개선 시스템 도입
- ② 현장점검반 등 금융현장 규제개선 절차 및 운영
- ③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통제절차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불가
- ④ 가격, 배당 등 경영 판단행위에의 개입 금지
- ⑤ 음부즈만 제도 도입, 주기적 외부 실태평가 등

[추진 방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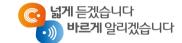
- □ 10.23(금), 민간 전문가 위주 「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^{*}」 (위원장: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를 **개최**
 - * 총 10명으로 구성(민간전문가 8인, 금융위원회 1인, 금융감독원 1인)

[향후 일정]

- □ 오늘 회의에서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**기본방향 및 규정체계를 논의**⇒ 공청회, 금융개혁회의 상정 등을 거쳐 **12월까지 제정**
- ※ 자세한 내용은 [붙임]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fsc.go.kr



붙임

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제정 계획

1. 제정 이유

□ **금융규제개혁**이 **상시화**되도록 금융위, 금감원, 기타 금융기관이 규제· 감독 시 지켜야 할 **원칙과 절차**를 규정

2. 기본 방향(안)

- □ 현행 **금융규제·감독 관련 규정**과 '15년 규제개혁방안 등을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으로 규정
 - → 금융위 규정 또는 대통령 훈령으로 추진
- 규제법정주의, 일몰제 등 법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규제 개선 시스템
- 2 현장점검반 운영 등 금융현장 규제개선 상시화
- **❸** 규제합리화 기준 등 "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"(6.15 발표) 주요 내용
- 4 "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"(9.18 발표) 주요 내용
- 행정지도 등에 따른 제재불가 원칙, 가격, 인사 등에의 개입 금지
- 행정지도 등 시행절차 및 금감원 감독행정 **내부통제 절차**
- 음부즈만, 행정지도 등에 대한 주기적 외부 실태평가 등
- **6** 규정의 내부 강제력 확보를 위한 **장치 마련**

3. 주요 내용

1 금융규제 제·개정 원칙

- 상대방의 권리·의무 제한 등 규제는 법률로 규정(규제법정주의)
- 2 시장 자율영역 범위 설정
- 가격, 배당 개입금지, 자율규제 위임범위 등
- ❸ 규제 합리화 기준
- 네거티브 적용범위, 업무영역 등 전 업권 공통 규제원칙 제시
- 4 일몰설정 의무화

2 행정지도 등 시행 원칙 및 절차

- 행정지도, 감독행정 위반 시 제재불가 원칙
- ② 금융당국의 **협회 자율규제** 제·개정에 대한 **개입금지**
- 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의 반영 요구 금지
- 4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자료제출 요구 금지
- **5** 행정지도, 감독행정 시행 절차(금감원 내부통제절차 등)

③ 금융규제 상시 개선 시스템

-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, 회의운영 절차, 주요 검토사항* 등 * 과거 폐지·완화된 규제 신설·강화 여부 등
- **❷ 금융현장 규제개선 업무처리** 프로세스 등
- ❸ 옴부즈만 권한, 업무처리 프로세스 등
- **4** 행정지도 등에 대한 주기적 외부 **실태평가**
- **6** 규제정비의 달(9월) 운영

4 위반시 인사조치

4. 추진 체계: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제정위원회

□ 금융개혁회의 하에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제정위원회 설치

● 금융규제 전문가 8人(위원장: 정순섭 금융위 비상임위원)으로 구성

성명	현 직위	비고		
정순섭	■금융위 비상임위원 ■서울대 로스쿨 교수	위원장		
심 영	■연세대 로스쿨 교수	_		
성대규	■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연구위원	_		
이명수	■법무법인 화우 변호사	_		
정대익	■경북대 로스쿨 교수	_		
임형석	■금융연구원 은행·보험연구실 실장			
황세운	황세운 •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실장			
김석영	김석영 •보험연구원 국제보험연구센터 센터장			

* 간사 : 금융위 금융정책과장, 금감원 법무실 국장

② 회의는 **총 3회 개최 예정**

* (1회)규정 제정 기본방향→ (2회)1차 회의 후 작성된 초안 검토→ (3회)최종안 마련

- ❸ 제정위원회 지원을 위한 실무 TF 구성
- 업권 의견취합, 관련 자료 작성 등을 위해 업권별 협회 등 자율규제 기관의 규제 담당자로 지원체계 구축

5. 향후 주요일정

① 1차 회의 : 10.23(금)

② 공청회 개최 : 11.26(목, 예정)

③ 금융개혁회의 심의 : 12.24(목)

④ 금융위원회 심의: 12.30(수)